

아. 유동화거래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위험보유규제 도입(안 제33조의2)

자산유동화 업무 및 유동화증권 등의 거래에서 유동화자산의 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유동화증권 등의 투자자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자산보유자 등에게 유동화증권 등 발행금액의 일정 비율만큼을 위험보유하도록 하고 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해서는 관련 세부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. 다만, 국가·지자체 등이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등 신용위험이 낮거나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낮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동화증권에 대해서는 그 관련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

자. 중요사항 발생시 유동화전문회사등의 보고의무 및 금융감독원장으로서의 업무 위탁 근거 마련(안 제34조의2 및 제38조제1항제2호, 제5호)

유동화전문회사등의 해산사유, 자산보유자의 파산 등 중요사항 발생시 유동화전문회사등으로 하여금 금융감독원장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, 금융위원회가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거부 또는 변경요구 업무 및 중요사항의 신고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법상 근거 마련

### 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(참조 : 금융소비자국 공정시장과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보내실 곳 : 금융위원회(금융소비자국 자본시장정책관 공정시장과)

- 일반우편 : (03171)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
- 전자우편 : wtsim@korea.kr
- 전화 : 02-2100-2688
- 팩스 : 02-2100-2678

### 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([www.fsc.go.kr](http://www.fsc.go.kr)/지식마당/법령정보/입법예고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## ●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0-73호

「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」을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12월 10일

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

「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」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

### 1. 개정이유

서울반도체 사건을 계기로 방사선기기 사용 신고기관의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확인됨에 따라, 방사선작업종사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「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」 일부 개정(안)
  - 신고 대상 기기의 취급에 관한 기술기준 신설(제63조의 2)
    - 사용장소를 지정하고, 사용 전 기기의 정상상태 여부를 확인하며 장비의 안전계통 임의조작 등을 금지
  -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역할과 책임 명확화(제63조의3)
    - 작업현장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방사선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권한을 방사선안전관리자에게 부여
  - 방사선기기 판매 취급기준 강화(제61조(동위원소), 제63조(발생장치))
    - 판매자에게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취급방법과 주의사항 등을 제품전면에 부착하고 교육자료 제공을 의무화

## 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(방사선안전과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(www.nssc.go.kr/정보마당/법령정보/입법·행정예고)를 참조하시거나,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(02-397-7332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,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 등

다. 보내실 곳

1) 일반우편 : (03154)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,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

2) 전자우편 : yjh1234@korea.kr

3) 팩스 : 02-397-7332

### ●기획재정부공고제2020-205호

「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」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12월 10일

기획재정부장관

#### 「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」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## 1. 개정이유

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 중 물량기준에 따른 특별긴급관세의 적용시한이 '20.12.31로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, 2021년도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 및 기준발동물량을 새로 규정하려는 것임

## 2. 주요내용

미곡류 16개 품목의 기준발동물량을 최근 3년간의 평균수입량 등을 감안하여 새로 정하려는 것임